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목 차



I. 2024년 부산광역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 경제 · 일자리 · 청년	2
2. 도시 · 교통	7
3. 보건 · 복지	11
4. 여성 · 출산 · 보육	23
5. 안전 · 환경 · 위생	30
6. 문화 · 체육 · 관광	41

II. 기타 부록

1. 2024년 주요 착 · 준공 사업	46
2. 2024년 주요행사 일정	50

1. 경제 · 일자리 · 청년

1	지역화폐 동백전 동백플러스 가맹점 캐시백 혜택 조정	3
2	2024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제 확대 시행	3
3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연납) 공제이자율 축소	3
4	납부지연가산세,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 통합	4
5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 <small>신설</small>	4
6	40~50대 구직자 정규직 채용 촉진 <small>신설</small>	5
7	기업 연계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small>신설</small>	5
8	부산광역시 청년 연령 상향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6

2. 도시 · 교통

1	시내버스운송약관 '음식물 반입규정' 신설 <small>신설</small>	8
2	법인 승용자동차 전용번호판(연녹색) 도입 <small>신설</small>	9
3	공중이용시설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시행	10

3. 보건 · 복지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상향 및 긴급복지 등 생계비 인상	12
2	일상돌봄서비스사업 확대 시행	12
3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시행 <small>신설</small>	13

4	퇴원환자안심돌봄 서비스 시행 <small>신설</small>	13
5	고독사 위험군 지원 확대	14
6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체계 구축 <small>신설</small>	14
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 인상	15
8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 <small>신설</small>	16
9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16
10	노인 일자리 수당(활동비) 상향 지원	17
1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인상	17
12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	18
13	부산형 소아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18
14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로 통합 운영	19
15	유치원·어린이집 및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20
16	부산시 장애인치과센터 상시 운영	20
17	환자 처방 시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21
18	병원 병상 및 개설 사전심의 제도 시행	22

4. 여성·출산·보육

1	부산시 다자녀가정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small>신설</small>	24
2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24
3	0~1세아 부모급여 지원 확대	25

4	청소년쉼터 등 퇴소청소년 자립수당 지급기간 연장	25
5	임산부 배려식 알리미 핑크라이트 기능 개선	26
6	유치원 및 초중고 무상급식 단가 6% 인상 지원	27
7	부산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27
8	가임력 보존지원사업 시행 <small>신설</small>	27
9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28
10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28
1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small>신설</small>	28
12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29
13	청소년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29

5. 안전·환경·위생

1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31
2	강우 시 하천 진·출입 통제기준 강화	32
3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small>신설</small>	32
4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small>신설</small>	33
5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	33
6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행	34
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개선	35
8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저소득층 지원대상 확대	35

9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등 확대	36
10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정책 시행 신설	36
11	광역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37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산단 및 공장) 이행강제규정 등 마련 신설	38
13	인공조명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시행	39
14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신설	40

6. 문화·체육·관광

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42
2	관광산업 규제혁신 및 제도 개선	43
3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운영	44

I. 2024년 부산광역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2024년 부산광역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① 경제·일자리·청년

① 경제·일자리·청년 분야

1. 지역화폐 동백전 동백플러스 가맹점 캐시백 혜택 조정

소상공인지원과
051-888-4792

지역화폐 동백전(부산 지역사랑상품권)의 특별한 가맹점인 동백플러스 가맹점에 대한 **추가 캐시백 혜택**이 기존 2%에서, **3%로 조정**됩니다.

❖ (시행) 2024년 1월 1일

- ◇ (사업내용)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동백전 QR결제를 기반으로 가맹점과 부산시가 함께 혜택을 더 하는 동백전의 특별한 가맹점인 동백플러스 가맹점 운영
- ◇ (변경내용) 동백플러스 가맹점 모집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24년부터는 기존 부산시에서 지원하던 추가 캐시백 2%를 **3%로 상향 조정**

2. 2024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제 확대 시행

민생노동정책과
051-888-6482

부산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인 **2024년 부산형 생활임금(시급 11,350원)**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부산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부산시 민간위탁기관 등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시행) 2017년 3월 9일

- ◇ (금액) 시급 **11,350원(일90,800원, 월2,372,150원)** ※ 일 8시간, 월 40시간 근무기준
- 2023년 생활임금(11,074원) 대비 **2.5% ↑**
- ◇ (대상) 부산광역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자회사 포함) 소속 노동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확대)

3.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연납) 공제이자율 축소

세정운영담당관
051-888-2135

선납 이자보전 취지에 부합하고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축소**합니다.

❖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시행) 2024년 1월 1일

현행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동차세 연납공제금액- 연세액 × (연납대상기간 / 365)의 7%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동차세 연납공제금액- 연세액 × (연납대상기간 / 366[*])의 5%* 2024년은 윤년으로 366일

- ◇ (연납공제율) (2023년) 7% → (2024년) **5%** → (2025년~) 3%

4. 납부지연가산세,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 통합

세정운영담당관
051-888-2136

지방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부를 지연한 경우 부과되는 기존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 증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을 통합합니다.

❖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시행) 2024년 1월 1일

현행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 납부를 지연할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중)가산금'으로 각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 납부를 지연할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 통합 운영

5.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

신설

수산정책과
051-888-5405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해양쓰레기)을 저감하고 자원피해(유령어업)를 예방하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시행합니다.

❖ (근거) 「수산업법」 제81조, (시행) 2024년 1월 12일

◇ (사업대상) 통발어구(장어통발 제외) ※ 부표·자망 등으로 단계적 확대

◇ (사업내용)

- 2024.1.12.부터 보증금 부가 및 표시 부착 어구 판매
- 각 지자체별 반납장소에 표시가 부착된 어구 반환 시 보증금 환급

1000원  PANTONE 123 C	색상	문구	스프링	
	노랑색	어구·부표 보증금 1,000원		
2000원  PANTONE 1585 C	색상	문구	원형	반구형
	주황색	어구·부표 보증금 2,000원		
3000원  PANTONE 185 C	색상	문구	사각	붉은대게
	빨강색	어구·부표 보증금 3,000원		

6. 40~50대 구직자 정규직 채용 촉진

신설

경제정책과

051-888-4372

중년층 및 끼인세대 구직자 채용 촉진과 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4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경상운영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제6조,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 제5조
(시행) 2024년 1월 1일

◇ (지원대상)

- (기업) 부산 소재 중소·중견기업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부산시 전략산업 기업, 부산시 인증기업(선도기업, 향토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제조업 기업 등

- (구직자) 부산 거주 40~59세로 실업기간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급여 대상자

◇ (지원내용) 정규직 채용기업 경상운영비 및 간접노무비 지원

- (경상운영비) 교육훈련비, 홍보마케팅비, 안전관리비, 인사노무비 등

- (간접노무비) 채용직원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 (지원금액) 신규 채용 및 고용유지(6개월) 시 1인 최대 456만원

◇ (지원규모) 총 100명

7. 기업 연계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신설

경제정책과

051-888-4372

노년층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경상운영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제6조 (시행) 2024년 1월 1일

◇ (지원대상)

- (기업) 부산소재 중소·중견기업 중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에 근로자 채용 기업

* 은퇴자의 경력을 살릴 수 있거나 노년층 근무에 적합하면서 구인난 해소 필요성이 큰 직무 등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보건·의료직, 영업직, 설치·정비·생산직 등 ※전문직, 단순·저숙련 등은 제외)

- (구직자) 부산 거주 60세 이상 구직자(정년 후 재채용 가능)

◇ (지원내용) 정규직·계약직(1년 이상) 채용기업 경상운영비 및 간접노무비 지원

- (경상운영비) 교육훈련비, 홍보마케팅비, 안전관리비, 인사노무비 등

- (간접노무비) 채용직원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 (지원금액) 신규 채용 및 고용유지(12개월)시 1인 최대 360만원

◇ (지원규모) 총 380명

8. 부산광역시 청년 연령 상향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청년희망정책과
051-888-7876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및 청년정책 지원 대상의 폭 확장을 위해 **2024년 1월 6일부터 청년 연령이 상향**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4년 1월 6일

◇ (변경사항)

현 행	변 경
• (청년연령) 18세 이상 34세 이하	• (청년연령) 18세 이상 39세 이하

법령 제·개정 사항

-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개정 (2023.7.5. 공포, 2024.1.6. 시행)에 따른 청년 연령 상향 조정 (제3조 제1호) * (18세 이상 34세 이하 → 18세 이상 39세 이하)

◇ (관련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청년 취업 정장대여 서비스(드림옷장)	(대상) 만15~39세 이하 부산 거주(거소) 청년 구직자 (내용) 입사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및 코디컨설팅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청년 자산형성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근로청년 4,000명 (소득기준 별도, 근로형태 무관) (내용) 청년 매월 저축액 대비 1:1 市 매칭 지원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부산소재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 청년(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내용) 1인당 복지포인트 100만원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본인 4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 이하 (내용)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대출이자(시 20% 지원 자부담 1.5%) 지원
청년 신용회복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9~39세 청년 (내용) 재무전문상담, 신용회복 및 연체예방 비용지원, 맞춤형 금융교육 등
청년취업 도전 프로젝트	(대상)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18~39세 청년 (내용) SW 인재 양성 교육(스파로스 아카데미), 금융 인재 양성 교육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대상) 18~39세의 부산에서 활동(예정)하는 5인 이상 청년 커뮤니티 (내용)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및 네트워킹 활성화
청년 마음이음 사업	(대상) 18~39세의 심리상담이 필요한 부산 거주 청년 (내용) 일대일 전문 심리상담 지원(4~7회기), 마음치유 집단 프로그램 운영(대인관계, 자기이해 등 12~13개 프로그램)
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	(대상) 18~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중 최종 학교를 졸업·중퇴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내용) 취·창업 활동비 최대 180만원(포인트) 지원(30만원×6개월)

2024년 부산광역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② 도시·교통

② 도시·교통 분야

1. 시내버스운송약관 '음식물 반입규정' 신설

신설

버스운영과
051-888-3965

시내버스 운송약관 내에 불결, 악취 등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유발하거나 일회용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의 반입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합니다.

❖ (시행) 2024년 1월 1일

◇ (기존) 시내버스 운송약관 내 음식물 반입 관련 규정 없음

◇ (신설) 시내버스 운송약관 내 음식물 반입 규정(별표1)

[별표 1]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규정

1. 반입금지 음식물

구분	내용
적용기준	가벼운 충격(의자 등에 부딪히거나,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썰 수 있는 음식물 또는 포장되어 있지 않은 음식물
적용대상	1) 일회용 용기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2) 일회용 용기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3) 여러 개의 일회용 용기를 운반하는 상자 등에 담긴 음식물 4)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 일회용 용기 : 일명 “테이크아웃 컵”

2. 반입허용 음식물

구분	내용
적용기준	차내에서 취식할 목적이 아닌,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소지하고 타는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등
적용대상	1)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 2) 뚜껑이 달린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3)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4) 밀폐형 텀블러, 보온병 등에 담긴 음식물 5)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 (시장 등에서 구입,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

2. 법인 승용자동차 전용번호판(연녹색) 도입

신설

택 시 운 수 과
051-888-4041

법인 및 공공이 사용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사적사용 및 세금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번호판과 구분되고 시인성이 높은 **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연녹색)**을 도입합니다.

❖ (근거)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2024년 1월 1일

◇ **대상자동차 : 8천만원이상 법인승용차**(신규는 출고기액 이전은 과세표준액 기준)

- **법인 소유, 법인이 리스·렌트한 차량과 공용차량이 대상**

- (법인 소유) 자동차등록신청서 상 소유자가 법인(성명, 법인등록번호)인 승용차
※ 운수사업용(택시, 버스, 렌트 등) 및 리스사 소유 승용차는 제외
- (법인 리스) 리스사 소유 승용차 중 법인이 임차한 차량
- (법인 렌트) 렌트사 소유 승용차 중 법인이 임차(1년 이상)한 차량
- (공용 차량) 관용 차량(등록신청서 상) 또는 번호판 고시 제1조의2제5호가목에 따른 기관들이 임차(리스·렌트)한 차량

◇ **시행시기 : 2024. 1. 1.부터**

- 시행일 이후 신규·이전 등록 차량, 임차계약 차량 및 희망차량

◇ **번호판색상 : 연녹색바탕에 검정색문자**

현 행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자동차와 동일- 흰색바탕에 검정색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승용자동차 전용번호판- 연녹색바탕에 검정색 문자
	

법령 제·개정 사항

-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 제1조의2(정의) 법인업무용 자동차 신설
 - 제1조의3(번호판의 종류)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신설
 - 제4조(번호판의 색상)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 색상 신설(연녹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3. 공중이용시설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시행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52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 (시행) 2024년 1월 28일

◇ 법령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적용 시행

-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령」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충전시설 의무설치 :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3천만원 이하)

현 행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비율 -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용주차구역 : 규정없음 ② 충전시설 : 주차단위구획 200으로 나눈 수 이상 (100개이상시설 : 급속1기 이상) - 기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용주차구역 : 규정없음 ② 충전시설 : 규정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비율 -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용주차구역 :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② 충전시설 :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급속충전시설 20% 이상) - 기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용주차구역 : 총 주차면수의 2% 이상 ② 충전시설 : 총 주차면수의 2% 이상 (급속충전시설 10% 이상)

2024년 부산광역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③ 보건·복지

③ 보건·복지 분야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상향 및 긴급복지 등 생계비 인상

복지정책과
051-888-3174

수급자 선정기준이 상향(중위30%→32%)되고 기준 중위소득 인상^{6.09%↑} 등으로 최저생활 보장성이 강화되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이 인상됩니다.

❖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3, (시행) 2024년 1월 1일

현 행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4인 가구 162.1만원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4인 가구 183.4만원(+21.3만원,+13.2%)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기준 단가 162.1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기준 단가 183.4만원

※ 2017년 이후 최초 생계급여 지원기준 상향

2. 일상돌봄서비스사업 확대 시행

복지정책과
051-888-3151

돌봄필요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재가돌봄, 식사영양관리,심리지원이 5개 구에서 16개 구·군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4년 1월 중

- ◇ (지원대상) 돌봄필요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
- ◇ (사업내용) 재가돌봄,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서비스 지원
- ◇ (선정기준) 연령·가구·육구 기준 만족자(소득·재산 기준 무관)
※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
-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 전자바우처 방식

현 행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 지자체 : 5개구 -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 지자체 : 16개 구·군 - 부산시 전역

3.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시행 신설

복지정책과
051-888-3192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이동, 접수·수납·진료, 귀가동행 등의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시행) 2024년 2월

- ◇ **(지원대상)** 병원 이용 및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 ◇ **(제공기관)** 지역자활센터
- ◇ **(지원내용)**
 -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행매니저 양성·지원
 - 병원이동, 접수·수납, 진료 등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
- ◇ **(서비스비용)** 1시간 15천원, 초과 30분당 7.5천원
 - 중위소득 50% 이하 비용 지원, 그 외 자부담 이용 가능
-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퇴원환자안심돌봄 서비스 시행 신설

복지정책과
051-888-3192

병원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가사,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시행) 2024년 1월

- ◇ **(지원대상)** 수술, 중증질환 등 퇴원환자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등
- ◇ **(지원내용)** 전문 돌봄인력 파견을 통한 집중 돌봄서비스
 - 청소, 식사준비, 세탁 등 가사 및 세면, 구강관리, 이동도움 등 신체활동 지원 등
- ◇ **(제공기준)** 1일 4시간, 주 5일, 1개월(4주) 지원
- ◇ **(서비스비용)** 1시간 16,600원
 - 중위소득 50% 이하 비용 지원, 그 외 자부담 이용 가능
- ◇ **(제공절차)** 의료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 (의뢰)

5. 고독사 위험군 지원 확대

복지정책과
051-888-3152

고독사 위험군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시범으로 시행되었던 사업이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으로 전 구군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근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시행) 2024년 상반기

◇ (사업대상) 고독사 위험군으로 선별·관리하는 대상자 ※ 고독사 위험도 판단도구 적용

◇ (사업내용)

- 고독사 위험군 발굴·관리 : 고독사 위험군 발굴, 판단도구 활용 위험군 선별관리
- 민간협력 안부확인 : 인적 자원망 활용 안부확인, ICT 활용 모니터링 등
- 생활 환경 및 생활 형태 개선 지원 :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운영
-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 자조모임, 문화활동 등
- 사후관리 :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지원

현 행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시행 지자체 : 6개 구 - 중구, 서구, 동구, 사하구, 사상구, 수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 지자체 : 16개 구·군 - 부산시 전역

6. 최종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체계 구축

신설

장애인복지과
051-888-3222

타인에게 위해 등으로 기존 돌봄 연계가 어려웠던 최종증 발달장애인 대상 단계별 1:1돌봄 체계가 구축되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 '23.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세부 내용 변동 가능

❖ (근거)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3, (시행) 2024년 6월

◇ (수혜대상) 만18세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 (사업내용) 최종증 발달장애인 대상 단계별 1:1 돌봄 체계 구축지원

- 단계별 돌봄 지원 : (주간돌봄) 1단계, 2단계 지원, (24시간 돌봄) 3단계 지원

유 형 I	유 형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돌봄) - 1단계 그룹형 1:1 지원 - 2단계 개별 1:1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돌봄) - 3단계 24시간 개별 1:1 돌봄 지원 낮활동1:1지원+주거지원·야간돌봄

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 인상

장애인복지과
051-888-3231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출산비용지원금이 인상**됩니다.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조, (시행) 2024년 1월 1일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이면서,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지원내용

현 행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금액)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방법) 계좌 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금액) 태아 1인 기준 1.2백만원• (지급방법) 계좌 입금

◇ 신청방법

-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신청방법)
 - ①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②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 (필요서류)
 - ①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② 신청서
 - ③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의료기관 발행 사산 진단서 중 1부

8.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 신설

장애인복지과
051-888-3232

저소득장애인의 결식 예방과 안정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장애인에게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시행) 2024년 상반기

- ◇ (사업목적) 저소득장애인의 결식 예방 및 지역사회 돌봄 강화
-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
- ◇ (지원내용) 점심 무료 제공 ▸ 주5일 1인 1식(중식)
- ◇ (수행기관) 17개 장애인복지관

9.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노인복지과
051-888-3266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기능·건강유지 및 악화 예방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제공합니다.

❖ (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2, (시행) 2024년 1월 1일

- ◇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 (지원내용) 개인별 돌봄 욕구, 필요 정도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 등 제공
- ◇ (지원대상 인원 및 중점돌봄군 돌봄시간 확대)

현 행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인원 35,238명 (일반 및 중점돌봄 34,488명, 특화 750명)• 중점돌봄군 돌봄시간 월 16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인원 36,649명 (일반 및 중점돌봄 35,899명, 특화 750명)• 중점돌봄군 돌봄시간 월 20시간

10. 노인 일자리 수당(활동비) 상향 지원

노인복지과
051-888-3297

노인일자리 참여자 월 활동비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4만원까지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시행) 2024년 1월 1일

◇ (지원내용)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지급 * 노인일자리 유형별 상이

- '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인원 : 총 62,727명('23년 대비 8,347명 증) ※ 모집인원 변동 가능

· 공익활동 44,123명, 사회서비스형 11,124명, 시장형 5,598명, 취업알선형 1,882명

· 공익활동 : 월 30시간 11개월 활동(노노케어, 교통도우미 등)

· 사회서비스형 : 월 60시간(주 15시간) 10개월 활동(보육교사보조,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 (지원액 인상)

현 행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활동 월 27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59.4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활동 월 29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63.4만원

1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인상

아동청소년과
051-888-1642

양육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립수당을 인상 지원**합니다.

❖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 2024년 1월 1일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종료 등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로,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 종료자(단, 20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현 행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금액) 월40만원(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금액) 월50만원(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12.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

아동청소년과
051-888-1642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을 위하여 국가가 **월 10만원 내 1:2 매칭으로 지원**합니다.

❖ (근거) 「아동복지법」 제42조, 제43조 (시행) 2024년 1월 1일

- ◇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및 만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현 행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만12세~17세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만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

13. 부산형 소아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보건위생과
051-888-3642

야간·휴일 소아진료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인 소아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등 운영 확대 및 지원 강화로 환자 증상 단계별 소아진료 체계를 구축**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4조,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 (시행) 2024년 1월 1일

- ◇ **(사업목적)** 소아전문인력 확보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 **(사업내용)**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개소, 대학병원 2개소, 달빛어린이병원 5개소 이상

구 분	진료기관	비 고
중증환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부산권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중등증환자	24시간 소아응급진료기관	대학병원 소아전문의 24시간 응급실 당직운영 (1개소 → 2개소)
경증환자	달빛어린이병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 (4개소 → 5개소 이상)

14.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로 통합 운영

건강정책과
051-888-3341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 기존 4자리(1393) 번호 등에서 기억하기 쉬운 **세자리 (109)**로 단축, 통합 운영됩니다.

❖ (근거) '23.10.23. 국민통합위원회·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동 발표 (시행) 2024년 1월 1일

◇ 자살예방 상담전화 '세 자리 통합 상담번호 구축'

현 행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타기관 상담 병행 -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 생명의 전화 ☎1588-9191 - 청소년 전화 ☎13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 [109] 하나로 통합 안내 -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으로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라는 의미 포함

※ '24년 1월부터는 자살 사건 보도 시, 자살예방 관련 기관 정보나 긴급도움 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문구" 변경

현 행	변 경
<p>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p>

15. 유치원·어린이집 및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건강정책과
051-888-3401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확대 및 신설되었습니다.

❖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시행) 2024년 8월 17일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

- 학교 시설의 경계선 30미터 이내의 구역 등 법령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과태료 10만원 부과

현 행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 확대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 신설

16. 부산시 장애인치과센터 상시 운영

건강정책과
051-888-3362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장애인구강진료 인프라 확충 및 공공의료원의 구강진료체계 역할강화를 위해 **부산의료원의 장애인치과센터**를 상시 운영합니다

❖ (근거) 「구강보건법」 제6조·제7조, (시행) 2024년 1월 이후

◇ (부산의료원) 장애인 구강진료시스템 변경 * 주1일→주5일

- (대상) 중·경증 등 장애인의 구강진료 수요자
- (계획) 사업지원(위탁) : 치과의사 등 구강전문인력 채용으로 체계 보완

현 행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분 장애인구강진료 - 매주 목요일, 주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구강전문진료 체계 보완 - 주5일, 상시 구강진료(예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근 치과의사 1인 근무 - 치과위생사 2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근 구강전문인력 보강(채용 후) - 치과의사 1인, 치과위생사 등 4인

법령 제·개정 사항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 : 2023.10.11. 공포
- (제6조의 3) 위탁근거 마련

17. 환자 처방 시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보건 위 생 과
051-888-3384

의사가 특정 마약류 처방시 **의무적으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환자의 의료쇼핑을 통한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4년 6월 14일

- ◇ (현행) 환자의 최근 1년간 마약류 의약품 투약이력을 조회하여 과다·중복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 (개정) 의사가 특정 마약류 처방시 의무적으로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하도록 함
 - 의료현장의 제도 수용성을 고려하여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군부터 의무화 대상 약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단서 조항으로, 예외 상황을 규정 (응급상황 및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현 행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취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투약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긴급한 사유나 오남용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

법령 제·개정 사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 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병원 병상 및 개설 사전심의 제도 시행

보건 위 생 과
051-888-3414

종합병원 개설 준비단계에서 사전심의를 시행하는 등 지역내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관리제도 시행으로 의료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근거) 「의료법」 제60조, (시행) 2024년 1월 1일

◇ (대상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병상을 신증설하고자 하는 자

- 일반/요양병상 신증설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병상증설)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 정신/치과/한방/재활 병상은 제외

◇ (사업내용) 부산지역 내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관리

- 제3기 부산광역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따른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 관리
- 종합병원 개설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 시행

현 행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병원 개설단계에서 본심의만 실시 - 관련시설을 모두 갖춘 후 본심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병원 개설시 사전심의 및 본심의 실시 - 부지·건물 매입 및 건축허가 신청전 (사전)심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가 기준 - 의료법에 따른 시설기준 적합시 개설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가 기준 - 시설기준 및 병상관리계획 적합시 개설가능

법령 제·개정 사항

- 의료법 제33조 제4항
 -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의료법 제33조 제5항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4년 부산광역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④ 여성·출산·보육

④ 여성·출산·보육 분야

1. 부산시 다자녀가정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신설

창 조 교 육 과
051-888-2004

다자녀가정의 자녀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시행) 2024년 5월 20일

- ◇ (사업목적)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지원포인트 지급
- ◇ (사업대상) 자녀 중 1명 이상이 2006년생~2017년생(초·중·고 학령 자녀)인 부산 다자녀가정
- ◇ (사업내용) 교육지원포인트 지급(동백전, 연 1회) ▶ (2자녀) 300천원, (3자녀 이상) 500천원
- ◇ (사 용 처) 학습교재(도서)비, 학습공간비(스터디카페, 독서실), 예체능 학원비 등

2.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출 산 보 육 과
051-888-1566

출생순위별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시행) 2024년 1월 1일

- ◇ (지원대상)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 (지원내용) 출생순위에 따른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첫째 출생아 200만원, 둘째 이후 출생아 300만원

현 행	변 경
• 모든 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지급	• 첫째 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지급
	• 둘째 이후 출생아 300만원 바우처 지급

- ◇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포(bokjiro.go.kr)

3. 0~1세아 부모급여 지원 확대

출산보육과
051-888-1571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 (시행) 2024년 1월 1일

◇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1세아

◇ (지급/방식) 매월 25일 현금 지급(계좌 입금)

현행	변경
• 0세 70만원 지급	• 0세 100만원 지급
• 1세 35만원 지급	• 1세 50만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0세 보육료 바우처 지원 후 부모급여와 보육료 차액만큼 현금 지원, 1세 보육료만 지원

◇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4. 청소년쉼터 등 퇴소청소년 자립수당 지급기간 연장

아동청소년과
051-888-1634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대상, 지원 기간(3→5년), 대상 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시행) 2024년 1월 1일

◇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퇴소 3년 이내의 청소년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2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 연속하여 보호)

현행	변경
•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 (지원대상) 쉼터 퇴소청소년 +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종이거나 종료된 청소년 ※ 단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입소기간 필요
• (지원기간) 최대 36개월 지원 - 지원금액: 월 40만원	• (지원기간) 최대 60개월 지원 - 지원금액: 월 40만원 ※ 기존 지급받고 있는 청소년도 5년으로 연장 지급
• (대상쉼터) 단기, 중장기	• 단기, 중장기 + 일시(고정형) 쉼터

5. 임산부 배려석 알리미 핑크라이트 기능 개선

출산보육과
051-888-1564

임산부 배려석 알리미 핑크라이트가 기능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구현과 임산부 편의도모, 다양한 임산부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 (시행) 2024년 상반기

구 분	현 행	변 경
발신기(비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산부가 보건소 방문하여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산부가 모바일 앱 설치하여 이용
임산부 신원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에서 산모수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면 서비스로 임산부 확인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신기(비콘) 소지시 핑크라이트 점등, 음성송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산부가 앱에서 핑크라이트 작동(ON/OFF), 소리 및 불빛 강도 등 임산부가 직접 제어 가능
수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대 (도시철도 내 좌석기둥) 외장배터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대 (도시철도 내 좌석기둥 + 좌석 뒤편 공기정화기 옆 벽면) 도시철도 내 상시전원 사용으로 안정적인 운영
데이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별 월 사용, 핑크라이트 실제 이용률 등 다양한 통계 수신기 위치별 관리번호 등으로 유지 보수 용이(개인정보 취급 없음)
출산·보육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보육정책 소개, 기관안내 등 제공

6. 유치원 및 초중고 무상급식 단가 6% 인상 지원

창 조 교 육 과
051-888-2004

'24년은 **유치원 및 초중고 무상급식단가**를 전년도 본예산 대비 **6%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근거) 「학교급식법」 제4조, (시행) 2024년 3월 1일

- ◇ (무상급식 추진경과) '11년 초등 1학년 무상급식 실시 → '14년 초등 전체 시행
→ '17년 초중학교 전체 → '21년 초중고 전체 → '22년 **유치원 및 초중고 전체**
- ◇ (단가 인상) 유치원 및 초중고 급식단가 물가인상률 등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하여 **6% 인상 지원**

(단위 : 원)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3년	2,750	3,640	4,650	4,850
2024년	2,920	3,860	4,930	5,150

7. 부산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건 강 정 책 과
051-888-3364

부산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를 위해 기존 부산시 협약의료기관으로 한정된 시술기관을 **전국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역제한 요건을 폐지**하여 확대 시행합니다.

❖ (근거) 「모자보건법」 제11조, (시행) 2024년 1월 예정

- ◇ (지원대상) 부산시 난임부부(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
- ◇ (지원내용)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최대 110만원 지원
- ◇ (변경내용) **지역제한 폐지**하여 보건복지부 지정 전국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가능

8. 가임력 보존지원사업 시행 신설

건 강 정 책 과
051-888-3364

암 등 가임력 손상 우려 질병·질환자(AMH 1.0 미만) 대상으로 **가임력 보존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고령사회에 선제적 대응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가임력보존지원 조례」 제4조, (시행) 2024년 1월 1일

-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난임이 우려되는 19~44세 질병·질환 기혼(사실혼 포함) 여성(암환자, AMH 1.0 미만)
- ◇ (지원내용) **연200만원 한도**(배아 생성 및 보존·이식·동결 보관·난소 보호치료 비용)
- ◇ (지원기간) 1인 최대 연속 3년

9.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건강정책과
051-888-3364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상의 소득제한 요건을 폐지**하여 확대 시행합니다.

❖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시행) 2024년 1월 예정

- ◇ (지원대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3세 미만 영유아
- ◇ (지원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미숙아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상한 지원) 신생아 난청 선별 및 확진 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양측 보청기 지원 (▲선별검사 최대2회, ▲확진검사비 7만원 한도, ▲양측보청기(개당131만원 한도)
- ◇ (변경내용)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및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0.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건강정책과
051-888-3364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강화를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의 소득제한 요건을 폐지**하여 확대 시행합니다.

❖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시행) 2024년 1월 예정

- ◇ (지원대상)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외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해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및자궁의 부속기 질환
- ◇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 (변경내용)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건강정책과
051-888-3364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 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을 지원합니다.

❖ (근거) 「모자보건법」 제11조, (시행) 2024년 4월 예정

- ◇ (지원대상) 난임진단 전이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백만원, 부부당 2회까지**)
-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12.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여성가족과
051-888-1604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상향**되어 **지원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양육비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시행) 2024년 1월 1일

◇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 (변경사항)

현 행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중위소득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중위소득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금액)<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 자녀 1인당 20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3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금액)<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 자녀 1인당 21만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영아 양육시 40만원

13. 청소년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여성가족과
051-888-1604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가정의 안정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상향**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 (시행) 2024년 1월 1일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 (변경사항)

현 행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지원금액) 자녀 1인당 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3%• (지원금액) 자녀 1인당 25만원

2024년 부산광역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⑤ 안전·환경·위생

⑤ 안전·환경·위생 분야

1.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안 전 정 책 과

051-888-2894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생명, 신체의 피해를 입은 시민분들(등록 외국인 포함)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중(22년~)인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상해진단 위로금^{12세 이하}을 추가**하여 확대 운영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4조, (시행) 2024년 2월 1일

◇ (보험기간) 2024. 2. 1. ~ 2025. 1. 31.

◇ (보험대상) 부산시에 주민 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담보명	보장 내용	보장금액
(1)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사태 포함)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태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2) 화재·폭발·붕괴 상해후유장해 (사태 포함)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태 포함)	2,000만원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500만원 한도
(5)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대상)	1,000만원 한도
(6) 감염병사망	법정 감염병 1~3급으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명시된 2, 3급 일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100만원
(7)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8)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9) 상해진단위로금	만 12세 이하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2. 강우 시 하천 진·출입 통제기준 강화

하천 관리과
051-888-7856

돌발성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우 시 하천 통제기준을 강화하고 일원화**합니다.

❖ (근거) 「하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매뉴얼(부산광역시)」 (시행) 2023년 10월 5일

◇ (진·출입 통제기준) 호우 예비특보 발효 시 하천 진·출입 즉시 차단

- 호우 예비특보 없이 호우주의보 발효 시 즉시 차단 실시
- 차단 해제는 市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www.safecity.go.kr)에서 하천수위 관심단계 해제 시를 기준으로 현장여건, 하천수위 등을 감안하여 해제 실시
- 온천천, 수영강 등 2개 이상 구·군을 흐르는 하천도 동일한 기준으로 일괄 통제

3.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신설

소방재난본부
051-760-5725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성능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 (근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시행) 2024년 1월 1일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기준 제정

-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제정으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

소방시설	주요내용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스프링클러설비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 30개 적용 및 헤드 수평거리 2.6미터 적용 등
자동화재탐지설비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
피난구조설비	옥상 출입문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및 주차장 중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기타	세대 내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조명등 설치

4.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신설

소방재난본부

051-760-5725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창고시설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특성을 고려한 **창고시설 전용의 화재 안전성능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 (근거)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시행) 2024년 1월 1일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기준 제정

- 창고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제정으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

소방시설	주요내용
소화기구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옥내소화전 및 소화수조	수원 기준 상향 (기준개수 * 5.2m³) ※ 그 외 용도 2.6m³
스프링클러설비	습식으로 하는 등 창고시설의 특성이 맞는 설치기준 마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전층경보방식 및 비화재보 예방을 위한 특수형 감지기 적용
유도등	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 적용 지하층 및 무창층은 피난유도선 설치

5.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

소방재난본부

051-760-5725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시행) 2024년 12월 1일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

-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하여 등록, 영업범위를 나누어 정하여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구분	전문소방시설관리업	일반소방시설관리업
자격구분	(주인력) 2명 소방시설관리사 + 5년 : 1명이상 소방시설관리사 + 3년 : 1명이상 (보조인력) 6명 고급 중급 초급점검자 각 2명 이상	(주인력) 1명 소방시설관리사 + 1년 : 1명이상 (보조인력) 2명 중급, 초급점검자 각 1명 이상
영업범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특급을 제외한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6.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행

소방재난본부
051-760-5713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협의하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어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합니다.

❖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시행) 2024년 12월 1일

◇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행

- 관리에 권원이 나누어진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이상의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①권원별로 선임된 선임자 중에서 선임, ②별도로 선임)
- 소방안전관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인, 총괄·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공동소방안전관리 협의회 운영

구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명칭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대상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법률개정으로 기존에서 제외되는 대상> ① 복합건축물이 아닌 지상층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업무시설 등) ② 복합건축물 중 층수가 5층 이상 ~ 11층 미만의 건축물 ③ 복합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이상 ~ 3만㎡ 미만의 건축물	
선임	• 신축 또는 소방관서장이 권원을 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 •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 관계인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선임한 안전관리자 모두 신고	
	자격	건물 • 총괄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 2급) 권원 • 권원 규모별 차등
운영방법	• 의무이나 조정가능 • 총괄 및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고 1명의 소방안전관리만 선임 가능	

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개선

보건 위 생 과
051-888-339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 중 **전염성 피부질환을 삭제** 및 **파라티푸스를 추가**하는 한편, **건강진단의 검진일자 준수 부담이 완화**됩니다.

❖ (근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일부 개정, (시행) 2024년 1월 8일

현 행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진단 항목 -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진단 항목 개선 -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진단 검사 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진단 검사·유예 기간 신설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8.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저소득층 지원대상 확대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84

대기관리권역 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의무설치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지원대상 및 물량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시행) 2024년 1월 1일

- ◇ (사업목적)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큰 저녹스보일러 보급 확대로 대기오염 저감
- ◇ (지원대상)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
 - 저소득층·취약계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자녀가구 등
- ◇ (지원금액) 보일러 1대당 60만원

현 행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금액/물량 : 저소득층 60만원(1,362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 금액/물량 : 60만원(4,086대)

9.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등 확대

자 원 순 환 과
051-888-3695

객실 50실 이상인 숙박업소가 **1회용품 규제 업종에 포함**되고, 배달앱·키오스크를 통해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고객에게 1회용품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 2024년 3월 29일

◇ (변경사항)

-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 1회용품 규제 업종 추가
 - * 규제 품목 및 방법 세부사항 별도 마련 예정
- 전자상거래(배달앱 등) 또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1회용품 안받기(미제공)'를 기본 조건으로 설정하여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기대효과)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따른 자원 절약과 폐기물 발생 감량

10.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정책 시행

신설

자 원 순 환 과
051-888-3692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도입을 통한 배출지점 원천감량, 자원화 실현**을 위한 조례가 시행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시행) 2024년 1월 1일

◇ (주요내용) 감량기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 구청장(군수)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 사업에 대해 시장이 비용의 일부 지원
-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감량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구청장(군수) 및 사업 시행자에게 권고

◇ (기대효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배출지점 원천감량 효과 및 기존 처리체계의 악취, 혐오감 등 주민 생활 불편 해소 기대

11. 광역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자 원 순 환 과
051-888-3691,3474

폐기물 처리비용 현실화와 이를 통한 광역처리시설 적정 운영을 위하여 **광역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가 **인상**됩니다.

- ❖ (근거)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별표2> 음식물류 (시행) 2024년 1월 1일
사업장폐기물 (시행) 2024년 7월 1일

◇ (주요내용) 광역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반입수수료 일원화 및 연차별 인상

- 음식물류 폐기물

구 분	반입수수료(원/톤)			
	현 행	2024년	2025년	2026년~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	18,000	53,000	60,000	70,000
생곡음식물쓰레기자원화(발전)시설	75,000	53,000	60,000	70,000

- 사업장폐기물

구 분	반입수수료(원/톤)				
	현 행	2024년	2025년	2026~2027년	2028년~
사업장종량제 적용	40,000	55,000	69,000	81,000	92,000
사업장종량제 적용 제외	60,000	69,000		81,000	92,000

◇ (반입수수료 적용례)

- 금번 인상된 반입수수료 적용은 이 조례 시행후 광역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부터 적용
-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에 한하여 적용

◇ (기대효과)

- 폐기물 처리비용을 현실화함으로써 광역처리시설 운영부담 완화 및 배출자의 폐기물 감량(재활용 촉진)에 기여
- 동일 성상, 동일 처리방식에 동일한 반입수수료를 부과하는 운영원칙 확립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산단 및 공장 이행강제규정 등 마련

신설

자 원 순 환 과

051-888-347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산업단지 및 공장을 대상으로 설치의무 이행기간과 강제규정을 마련,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 ❖ (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9조의2, 3 (시행) 2024년 3월 15일

◇ (주요내용)

- (설치 대상)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 톤 이상이고, 조성면적 50만㎡ 이상 산업단지, 연간 폐기물발생량 1만 톤이상이고, 조성면적 15만㎡ 이상 공장
- (설치 시설) 설치의무자는 산업단지·공장 준공 후 3년 이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 조성 완료 또는 조성 중인 산단에도 적용

◇ (주요 법률 개정내용)

- (설치기한 신설) 설치의무자는 산업단지·공장 준공후 3년 이내 폐기물처리 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부지 분양을 완료하고, 부지를 분양 받은 자는 3년 이내 설치
- (지자체 분양대행) 설치의무자는 3년 이내 처리시설 미설치 또는 부지 미분양시 지자체가 대신 부지 분양해 줄 것을 요청
 - * 지자체는 분양대행 요청 거부 가능, 부지 분양을 대신 해 줄 경우 지자체는 소요비용을 설치의무자에 청구
- (시정명령) 설치기한 내 의무 미이행 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3년 이내 기간을 정해 처리시설 설치 또는 부지 분양을 명령
-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미이행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매년 1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 (기대효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13. 인공조명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시행

환경정책과
051-888-3655

2021년 7월 15일부터 부산광역시 전역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기존 인공조명**에 대하여 **그간(3년간) 유예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2024년 7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 (시행) 2024년 7월 15일

◇ 부산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

구분	용도지역 등 이용현황	면적(km ²)	비율(%)
합계	부산시 전역	832.658	100.0
제1종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녹지(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공원묘지)	95.164	11.4
제2종	생산녹지, 자연녹지(1종 제외지역)	503.775	60.5
제3종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143.981	17.3
제4종	상업지역, 공업지역	89.738	10.8

◇ 빛방사허용기준 적용대상 및 허용기준

대상조명	측정기준 (단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공간조명	주거지 연직면 조도(lx)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이하			25이하	
광고 조명	전광류 광고물	주거지 연직면 조도(lx)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이하			25이하
		발광표면휘도 (cd/m ²)	해진 후 60분~24:00/ 24:00~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400/ 50이하	800/ 400이하	1000/ 800이하	1500/ 1000이하
	그밖의 조명기구	발광표면휘도 (cd/m ²)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이하	4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장식조명	발광표면휘도 (cd/m ²)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 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 광고조명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른 허가대상 옥외광고물

* 장식조명 : 건축물(연면적2천m²이상 또는 5층이상), 숙박·위락시설, 교량 등의 장식조명

◇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처분사항
•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 개선명령 및 과태료 30~300만원 (기준 초과율, 위반차수에 따라 차등부과)
• 개선명령 미이행 또는 이행하였으나 계속 초과 시	• 사용중지(제한)명령 및 과태료 30~300만원 (기준 초과율, 위반차수에 따라 차등부과)
• 사용중지(제한)명령 미이행 시	• 과태료 500~1000만원 (위반차수에 따라 차등부과)

14.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신설

환경정책과

051-888-3634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됩니다.

❖ (근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3, (시행) 2023년 12월 14일

◇ 전시가 가능한 경우

- 야생동물이 아닌종(가축, 반려동물), 해양생물, 야생동물 판매업의 동물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전시가능 종)

- 앵무목, 꿩과, 되새과, 납부리새과, 거북목 전종
- 코브라과, 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 전종(도마뱀아목, 이구아나아목 포함)
- 전갈목 등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절지동물문 전종

(전시 가능 시설)

- 생물자원관, 야생동물 구조센터, 보호시설, 수목원 등 공익적 목적의 야생동물시설

현 행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년 부산광역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⑥ 문화·체육·관광

⑥ 문화·체육·관광 분야

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지원금액 인상

문화예술과
051-888-5021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제공을 위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원합니다.

❖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시행) 2012년 2월 17일

◇ (사업목적)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지원으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제공을 통한 계층 간 문화격차 완화

◇ (사업기간) 2024년 1~12월 (발급 : 2.1. ~ 11.30. / 이용 : 발급일 ~ 12.31.)

* 자동재충전 : '24년 1월 중순 예정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2018.12.31. 이전 출생자)

- (수혜인원) 2024년 230,929명 ※ 256,508명^{전체} 대상자 × 90%^{수혜율}

◇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 13만 원** 지원)

- 문화 :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등
- 관광 : 교통수단(철도, 시외/고속버스, 국내항공, 여객선, 렌터카), 여행사, 관광명소, 휴양림/캠핑장, 동·식물원,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숙박
- 체육 :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재)부산문화재단

현 행(2023년)	변 경(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인원 : 237,828명 - 수혜율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인원 : 230,929명 - 수혜율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 연 11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 연 13만원 - 2만원 증액

2. 관광산업 규제혁신 및 제도 개선

관 광 진 흥 과
051-888-5211

여행업 등록 시 법인이 갖추어야 할 자본금 기준을 납입자본금으로 변경하여 등록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 (근거) 「관광진흥법」 제4조3항, (시행) 2024년 2월 9일

◇ 여행업 등록 시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요건을 납입자본금으로 명시

- 법인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등을 의미, 대차대조표 제출 불필요

※ 유예기간*동안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모두 등록기준으로 인정

(요건 중 1개를 갖추는 경우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처리)

* 유예기간 : 자본금 정의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관광진흥법령 시행 전('24.2.9.)까지

현 행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 자본금<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서류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입자본금<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서류 :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예시 : 법인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대차대조표 제출 불필요

법령 제·개정 사항

• 관광진흥법 제4조

-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운영

체 육 진 흥 과
051-888-3461

만 5~69세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제2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시행) 2024년 1월 1일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5~69세 장애인

현 행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 19~64세 장애인• 지원금액 : 매월 9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 5~69세 장애인• 지원금액 : 매월 110,000원

II. 기타 부록

(2024년도 주요 착·준공사업 및 주요행사 일정)

부록 1

2024년도 주요 착·준공 사업 * (대상) 사업비 100억원 이상

■ **착공사업**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규 모	사업비 (억원)	착 공 정
시민 행복 도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명장공원)	'24~'27.	· 공원: A=638,541㎡, 복합커뮤니티센터, 축구장 등 · 비공원(공동주택): A=81,607㎡, 1,644세대	6,850	'24.4.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사상공원)	'24~'27.	· 공원 : A=300,569㎡, 사상정원, 모험놀이장 등 · 비공원(공동주택) : A=49,837㎡, 840세대	3,394	'24.5.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동래사적공원)	'24~'27.	· 공원 : A=390,198㎡, 동래정원, 수영장 등 · 비공원(공동주택) : A=69,460㎡, 1,014세대	5,251	'24.5.
	50+ 복합지원센터 건립	'24~'25.	· 연면적 2,813㎡(지상4층)	196	'24.6.
	다대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	'23~'26.	· 배수펌프장 설치 Q=160㎡/min · 하수관로 정비 L=1,244m	232	'24.6.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온천공원)	'24~'27.	· 공원 : A=105,934㎡, 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 · 비공원(공동주택) : A=14,642㎡, 360세대	1,668	'24.6.
글로벌 허브 도시	탄성소재연구소 건립	'21~'25.	· 부지 2,817㎡ 연면적 4,030㎡	325	'24상.
	괘내마을~사상공원간 보행환경개선사업	'22~'25.	· 보행환경개선 1식 · 인도교 B=3.5m L=135m / 보행로 B=3.5m, L=44m)	110	'24.1.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	'14~'29.	· 도로건설 L=8.24km, B=4차로	3,956	'24.5.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설공사	'22~'26.	· 지하차도 L=420m B=17~26.2m(4~6차로)	467	'24.6.
	어린이, 청소년의 미래공간 '꿈나눔터'	'22~'25.	· 어린이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1식 ·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4,000㎡	150	'24.8.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16~'27.	· 조성면적 191만㎡	2조 2,213	'24.9.
	엄궁대교 건설	'18~'29.	· 도로건설 L=3.0km, B=6차로	3,455	'24.9.

사 업 명		사 업 기간	사 업 규 모	사업비 (억원)	착 예 공 정
글로벌 허브 도시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23~'29	· 도로건설 L=7.69km, B=4차로	6,225	'24.10.
	수리조선 혁신·기술센터 건립공사 (영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23~'26	· 지상9층, 연면적 3,300m ²	184	'24.11.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24~'30	· 시설면적 667만m ²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14조 2,636	'24.12.
창업 금융 도시	헬스케어 빅데이터센터 건립공사	'23~'26	· 1개동, 지상3층, 연면적 3,146.36m ²	1889	'24.3.
	에코델타 첨단지식산업센터	'20~'25	· 지상5층, 연면적7,134.74m ²	353	'24.4.
	부산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23~'26	· 부지 2,000m ² , 연면적 8,000m ² , 지상5층, · 창업주체 협업공간, IR센터 등	290	'24.12.
디지털 혁신도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15~'26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60,407.59m ²	2,283	'24.3.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	'23~'27	· 부지 2,350m ² · 연면적 4,230m ² (지하1층, 지상 2층)	195	'24.12.
저탄소 그린도시	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 사업	'19~'26	· 정수시설 개량 Q=10만 m ³ /일	352	'24.1.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조성사업	'23~'24	· 지상3층, 연면적 337599m ² (폐교 리모델링)	100	'24.2.
	사상 리버프런트시티(브릿지) 조성	'22~'25	· 공원형 보도교 L=200m, B=7~15m	170	'24.6.
	낙동강 생태공원 생태관광센터 조성	'22~'25	· 생태관광센터 건립 1동 · 연면적 2,200m ² , 지상 4층	120	'24.7.
문화 관광 매력 도시	부산마리나비즈센터 건립사업	'19~'26	· 지상4층, 1개동, 연면적9,116.42m ²	473	'24.1.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사업	'21~'25	· 지하2/지상3층, 연면적 22,266m ²	430	'24.4.
	시민공원 주차장	'24~'25	· 지상 1층, 지하2층 주차장 400대	150	'24.10.

■ 준공사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준공예정
시민 행복 도시	사상역 광역환승센터 건설사업	'19.~'24.	· 환승편의시설 1식 - E/S 6대, E/L 1대, M/W 1식(114m)	214	'24.7.
	부산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공사	'20~'24	· 지하2/지상3층, 연면적2,191.10㎡, 문화및집회시설(전시실)	158	'24.7.
	부산민주공원 사료관 준공	'20.~'24.	· 도로건설 L=376m, B=12~15m	194	'24.11.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	'14.~'24.	· 부산진구 부전역~김해시 진례신호소 -L=32.7km, 역 6개소)	1조 5,766	'24.12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24.	· 1개층 증축, 봉안기수 27,000기	105	'24.12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20~'24	· 우수저류시설 V=35,000㎡ 등	446	'24.12
	덕천교차로 자연재해위험지 정비	'16.~'24.	· 배수펌프장 용량 증설 2개소 및 관거 개선	332	'24.12
글로벌 허브 도시	동부산 E-PARK 일반산업단지	'10.~'24.	· 조성면적 34만㎡	1,266	'24.6
	부산복합혁신센터 건립	'18.~'24.	· 부산복합혁신센터 신축(연면적4,340㎡)	176	'24.6.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공사	'19~'24	도로건설 L=4.6km(4~6차로)	883	'24.9.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12.~'24.	· 조성면적 148만㎡	4,287	'24.12
	지사글로벌 일반산업단지	'17.~'24.	· 조성면적 42만㎡	2,135	'24.12
	명동 일반산업단지	'09.~'24.	· 조성면적 51만㎡	1,999	'24.12
	산양 일반산업단지	'09.~'24.	· 조성면적 5만㎡	394	'24.12

사 업 명		사 업 기간	사 업 규 모	사업비 (억원)	준 예 공 정
디지털 혁신도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테스트베드) 준공	'19.~'24.	· 부지 67,320㎡, · 연면적 9,141㎡(지상2층)	400	'24.2.
	자갈치 수산명소화 2단계 건립공사	'20.~'24.	· 지상3층, 연면적1,827.16㎡	101	'24.5.
저탄소 그린 도시	하수관로 신설(확충) 신평동 일원	'19.~'24.	· 하수관로(D150~200) 신설 L=6,224m, · 배수설비 1,270개소	192	'24.1.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농공단지~예림교차로) 확장공사	'08.~'24.	· 도로건설 L=1,710m, B=25m (3차공사 L=400m)	194	'24.4.
	동부산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16.~'24.	· 공공하수처리시설 Q=5,000㎡/일	354	'24.5.
	당감2배수지 설치공사	'21.~'24.	· 배수지 V=10,000㎡, 관로 D=500~600mm L=2.8km	214	'24.6.
	덕산정수장 미량유해물질 제거시설 설치	'19.~'24.	·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24㎡/일	200	'24.6.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 허브센터 구축	'21.~'24.	· 부지 2,809㎡, 연면적 2,187㎡(지상2층) · 시험.평가.인증장비 10종 구축	245	'24.6.
	하수관로 신설(확충) 양정동 제척지 일원	'17.~'24.	· 하수관로(D150~500) 신설 L=11,980m, 배수설비 1,130개소	271	'24.8.
	하수관로 확충(하단분구BTL)	'21.~'24.	· 하수관로(D150~200) 신설 L=74.5km, · 배수설비 6,226개소	773	'24.11.
	Daas기반 글로벌 스마트오션시티 구축	'20.~'24.	· 연면적 1,811.9㎡, 1개동 지상 4층 · 시험.평가장비 1종 및 기업기술지원	238	'24.12.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21.~'24.	· 정수장 및 배수지 위생관리 개선 1식	314	'24.12.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조성사업	'23~'24	· 지상3층, 연면적 3,375.99㎡ (폐교 리모델링)	100	'24.12.
문화 관광 매력 도시	부산콘서트홀 건립	'15.~'24.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9,862㎡ · 대공연장 2,000석, 챔버홀 및 부대시설	1,107	'24.8.
	천마산 복합전망대 관광모노레일 설치사업	'19.~'24.	· 모노레일 L=3.km, 상부복합전망대 A=2,250㎡	190	'24.12.

부록 2

2024년도 주요행사 일정

월별	행 사 명	기 간	장 소	담 당 부 서
1월	부산공동어시장 초매식	1.2.	공 동 어 시 장	수 산 진 흥 과
	2024 출향인사 신년인사회	1.31.	서 울 롯 데 호 텔	자 치 분 권 과
2월	2024 코리아커피챔피언십 & 스카마켓 인 부산	2.1.~2.4.	백 스 코	창업벤처담당관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2.16.~25.	백 스 코	체 육 진 흥 과
	미쉐린가이드 서울&부산 2024 선정 행사	2월 중	시 그 니 엘 부 산	관 광 진 흥 과
3월	삼일절 행사	3.1.	시 민 회 관	총 무 과
	2024 드론쇼 코리아	3.6.~3.8.	백 스 코	제 조 혁 신 과
	2024 부산 디지털 치의학 전시회 및 국제학술대회	3월 중	백 스 코	첨단의료산업과
4월	4.19혁명 기념식	4.19.	4.19혁명위령탑	총 무 과
	부산국제보트쇼	4.19.~4.21.	백 스 코 등	해양레저관광과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4.24.~4.26.	백 스 코	원자력안전과
	2024 부산오픈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	4월 중	스 포 원 파 크	체 육 진 흥 과
5월	2024 월드오브커피 & 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 부산	5.1.~5.4.	백 스 코	창업벤처담당관
	어린이날 경축행사	5.5.	미 정	아동청소년과
	2024 글로벌 헬스케어 위크	5.16.~5.18.	백 스 코	첨단의료산업과
	제8회 부산푸드필름페스타	5.26~5.28	영 화 의 전 당	영상콘텐츠산업과
	2024 아트부산	5.9.~5.12.	백 스 코	문 화 예 술 과
	2024 조선통신사 축제	5월 중	부 산 시 일 원	문 화 유 산 과
	제18회 부산콘텐츠마켓	5월 중	백 스 코	영상콘텐츠산업과
	2024 부산오픈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5월 중	금 정 체 육 공 원	체 육 진 흥 과
	부산지식산업센터 에코델타점 착공식	5월 중	에 코 델 타 시 티	창업벤처담당관
6월	현충일 추념식	6.6.	충 혼 탑	총 무 과
	2024 부산 MICE 페스티벌	6.13.~6.14.	백 스 코	마이스산업과
	2024 부산브랜드페스타	6.14.~6.16.	백 스 코	경 제 정 책 과
	6.25전쟁 행사	6.25.	시 청 대 강 당	총 무 과

월별	행 사 명	기 간	장 소	담 당 부 서
6월	클래식 파크콘서트	6월 중	부 산 시 민 공 원	문 화 시 설 개 관 준 비 과
	2024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6월 중	아시아드 주경기장 등	영상콘텐츠산업과
7월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서밋	7.11.~7.13.	누 리 마 루	청년희망정책과
	제45회 국제우주연구위원회 총회	7.13.~7.21.	백 스 코	미래기술혁신과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7월 중	수영만, 통영, 여수	해양레저관광과
8월	광복절 행사	8.15.	시 민 회 관	총 무 과
	제12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8.16.~8.25.	주요해수욕장일원	해양레저관광과
	2024 부산비엔날레	8.17~10.20	현 대 미 술 관	문 화 예 술 과
	2024 부산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	8.25.~8.31.	백 스 코	환 경 정 책 과
	제28회 부산바다축제	8월 중	주 요 해 수 욕 장	관 광 진 흥 과
	2024 피란수도 부산 문화유산 야행	8월 중	피란수도 부산 유산 일원	문 화 유 산 과
	제20회 현인가요제	8월 중	송 도 해 수 욕 장	영상콘텐츠산업과
9월	2024년 기후산업국제박람회	9.4.~9.6.	백 스 코	미래에너지산업과
	2024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9.10.~9.12.	백 스 코	안 전 정 책 과
	2024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	9.10.~9.12.	백 스 코	해양수도정책과
	청년주간행사	9.21.~9.27.	미 정	청년희망정책과
	제14회 부산실버영상제	9월 중	미 정	노 인 복 지 과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 선포식	9월 중	백 스 코	안 전 정 책 과
	K-ICT WEEK in BUSAN 2024	9월 중	백 스 코	인 공 지 능 소 프 트 웨 어 과
	제4회 부산국제트래블마트	9월 중	백 스 코	관 광 진 흥 과
10월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10.2.~10.11	영 화 의 전 당 등	영상콘텐츠산업과
	제19회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10.5.~10.8.	백 스 코	영상콘텐츠산업과
	한글날 행사	10.9.	시 청 대 강 당	총 무 과
	제27회 IAVE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	10.22.~10.25.	부 산 향 국 제 전 시 컨 벤 션 센 터	자 치 분 권 과

월별	행 사 명	기 간	장 소	담 당 부 서
10월	2024 부산민속예술제	10월 중	부 산 시 민 공 원	문 화 유 산 과
	BFAA국제아트페어	10월 중	백 스 코	문 화 예 술 과
	제8회 부산글로벌웹툰페스티벌	10월 중	미 정	영상콘텐츠산업과
	2024 부산국제록페스티벌	10월 중	삼 락 생 태 공 원	관 광 진 흥 과
	아시아 창업엑스포(FLY ASIA 2024)	10월 중	백 스 코	창업벤처담당관
	2024 한아세안 패션위크 및 대학패션 페스티벌	10월 중	부산패션비즈센터	제 조 혁 신 과
	제10회 R&D주간	10월 중	백 스 코	미래기술혁신과
	제18회 세계해양포럼	10월 중	미 정	해양수도정책과
	부산도시재생박람회	10월말~11월초	미 정	창 조 도 시 과
	부산건축제	10월말~11월초	미 정	총 괄 건 축 과
11월	2024 부산국제수산EXPO	11.6.~11.8.	백 스 코	수 산 진 흥 과
	제16회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11.8.~11.9.	백 스 코	마 이스 산 업 과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4	11.14~11.17	백 스 코	영상콘텐츠산업과
	부산미술대전	11월 중	미 정	문 화 예 술 과
	월드이스포츠서밋 2024	11월 중	미 정	영상콘텐츠산업과
	2024 패패부산(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11월 중	백 스 코	제 조 혁 신 과
	부산美아트 페스티벌	11월 중	미 정	보 건 위 생 과
	제19회 부산불꽃축제	11월 중	광 안 리 해 수 욕 장	관 광 진 흥 과
	2024 BWB 주간	11월 중	미 정	금융블록체인담당관
	2024 부산해양금융위크	11월 중	미 정	금융블록체인담당관
12월	북극협력주간	12월 중	미 정	해양수도정책과
	제37회 해운대 북극곰축제	12월 중	해 운 대 해 수 욕 장	관 광 진 흥 과
	부산국제아트페어(BIAF)	12월 중	백 스 코	문 화 예 술 과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위크	12월 중	영 화 의 전 당 등	영상콘텐츠산업과
	2025년 새해맞이 부산 시민의 종 타종행사	12.31.	용 두 산 공 원	관 광 진 흥 과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기획담당관 TEL (051) 888-1748, FAX (051) 888-1749
www.busan.go.kr